

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(의안번호 제 37 호, 2004. 9. 7)

총 무 위 원 회

2004. 9. 17

1. 심사 경과

가. 2004. 9. 7 : 사천시장 제출

나. 2004. 9. 7 ; 총무위원회 회부

다. 2004. 9. 14 : 제89회 사천시의회임시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(사회복지과장 임귀자)

가. 개정 이유

-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고자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1). 제명을 변경

- 사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
⇒사천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

2). 법령 명칭개정으로 인한 인용 법령명 정비

- 의료보호법 ⇒ 의료급여법

3). 개정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

- 의료보호대상자 ⇒ 수급권자
- 의료보호 ⇒ 의료급여
- 의료보호심의위원회 ⇒ 의료급여심의위원회

3. 관계법령

-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규칙

4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개정조례(안)은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(2001. 5. 24, 법류제 6474호)됨으로서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도 상위

법령과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
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주사에서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는 것은 현 업무담당부서에서 기금출납 업무를 담당케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(안)은 가결하여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 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 음